



제 335 회 정례회
제2차 행정안전복지위원회
2022. 10. 06(목)

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
**검 토 보 고 서**

---

의안번호	68
제안일자	2022. 09. 23.
회부일자	2022. 09. 28.

행정안전복지위원회  
전문위원실

#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---

## 1. 제 안 자 : 경상북도지사

## 2. 제안이유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 및 용어 등을 보완·정비함으로써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하고자함.

## 3. 주요내용

### 가.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개정사항 반영

- 1) “사용·수익허가”를 “사용허가”로 용어 변경(안 제16조제1항, 제19조, 제20조, 제21조, 제22조제1항, 제23조제1항, 제32조제1항, 제33조)

### 나. 상위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 규정

- 1) 조례로 위임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기준을 신설함(안 제12조)
- 2) 수의의 방법에 의한 사용허가 대상을 규정(안 제20조2 신설)

### 다. 일본식 한자어 정비 및 자구 개선(안 제15조제2항, 제24조, 제30조 제2항, 제38조제3항, 제40조제5호, 제65조, 제66조)

라.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청사의 표준 설계면적에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면적을 반영하도록 함(안 별표)

#### 4. 관계법령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조, 제10조의2,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7조, 13조
-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

#### 5. 관련부서 협의

- 규제심사 :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(법무혁신담당관)
- 부패영향평가 : 부패유발요인 없음(감사관)

#### 6. 입법예고 결과

- 예고방법 : 경상북도 홈페이지 공고
- 예고기간 : 2022.08.25. ~ 09.14.(20일간)
- 의견제출 : 없음

#### 7. 검토의견

##### 제안이유

- 상위법인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의 위임사항과 용어를 보완·정비하고자 제안됨

## □ 주요내용

-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맞춰 위임 사항에 대한 규정, 용어 변경, 자구 개선,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반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
- 안 제5조는 경상북도 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에 관하여 상위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함
  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11조의 개정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삭제를 반영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
- 안 제12조는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어 조례에 불필요한 의결 관련 사항을 삭제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하는 공유재산의 가격기준과 면적기준을 규정함
  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7조에 따라 가격기준과 면적기준을 명시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
- 안 별표 제1호에 경상북도 청사의 표준 설계면적 기준에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면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
  -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면적에 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

□ 종합의견

-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등 공유재산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
- 본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, 그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